

A. 신생클럽 결성 기준

1. 신청서

정식으로 조직되고 선출된 임원으로 조직된 모든 단체, 클럽 또는 모임은 라이온스클럽 차터를 국제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차터 신청서는 국제이사회의 결정을 위해 국제본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국제이사회의 차터 승인에 따라 협회 국제회장과 총무처장이 서명한 차터가 클럽에 발부된다. 차터가 공식적으로 발부되면 라이온스 클럽이 결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이온스클럽이 차터를 받는다는 것은 협회의 헌장 및 부칙을 비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국제라이온스협회가 법인체의 자격을 취득한 주에서 수시로 개정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되고 지배되는 본 헌장과 부칙에 의해 운영되는 본 협회에 귀속됨을 의미한다. 2018년 1월 1일부로 모든 차터 신청서는 MyLCI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2. 서류

어떠한 신생클럽에도 다음의 서류가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에 있는 국제본부에 접수되어 이사회 또는 지정인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차터가 발급되지 않으며, 국제협회의 기록에 등재되거나 정식 라이온스클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a. 작성이 완료된 공식 차터 신청서.
- b. 최소 20명의 차터회원 성명. 대규모의 현존 클럽으로부터 우호적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회원개발위원회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그 중의 75%가 동일한 복합지구 내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신입회원이어야 함.
- c. 차터비 완납 확인 - US\$35. 지회클럽 회원 제외, 라이온스클럽에서 전출한 굿 스탠딩 회원의 차터비는 US\$20. 차터비와 입회비는 환불되지 않음.

- (1) 국제헌장의 규정 혹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차터비 이외에는 어떠한 지구, 정지구 혹은 클럽도 추가로 차터비를 청구할 수 없음.
- (2) 미국과 캐나다 외 국가의 경우, 국제협회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3)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클럽의 차터 신청서에 대해 US\$100의 수수료가 부과됨.

3. 차터회원

라이온스클럽의 차터가 승인된 후 90일 이내 입회한 회원 전원은 차터회원으로 간주된다.
차터회원은 차터 승인 후 90일 내에 협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신속히 차터비를 납부해야 한다.
미납금이 있는 클럽은 현 클럽활동 정지 방침을 따른다.

4. 스폰서클럽

- a. 모든 신생클럽은 복합지구 현장 및 부칙에 명시된 클럽, 지대, 지역, 지구임원회 혹은 지구위원회에 의해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신생클럽 스폰서는 클럽이 위치한 지구의 지리적 분계선 내에서 스폰서를 한다. 신생클럽 스폰서는 그 책임에 대해 철저히 학습한다. 스폰서클럽은 소속 지구의 지구총재가 승인한 경우 최대 2개의 공동 스폰서클럽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공동 스폰서클럽은 타 지구 소속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새로운 국가로 클럽이 확장된 경우 코디네이팅 라이온이 협조한다.
- b. 새로운 지리학적 지역에 결성된 최초 클럽은 라이온스클럽 및/또는 소속 지구의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추가되는 각 신생클럽은 최초의 스폰서 지구 내 클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잠정지구로 편성될 때까지 스폰서클럽이 유자격 가이딩 라이온의 임명을 포함하여 스폰서에 따르는 전면적인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새 지역 외의 라이온스클럽이 스폰서할 수 있다. 국제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는 특별한 상황 하에 지구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클럽을 스폰서클럽으로 지명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 하에 신생클럽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결성될 신생클럽이 속한 지구 또는 인접한 지역에 기존 라이온스클럽이 없는 경우.
 - (2) 신생클럽 스폰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지구 내 클럽이 스폰서할 수 없는 경우.
 - (3) 스폰서를 희망하는 클럽회원들이 결성될 신생클럽 및 회원 희망자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 (4) 신생클럽을 조직하는데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기존클럽에서 질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지구 또는 지역 외의 클럽이 스폰서를 해야 할 경우. 이는 차터비에 한함.
- c. '신생클럽 스폰서' 글자를 수 놓은 엠블럼이 부착된 공식 클럽배너를 스폰서클럽에 수여한다.

5. 클럽명

- a. 제안된 라이온스클럽 또는 지회클럽은 '자치 도시' 혹은 이에 동등한 정부 행정 구획 명칭을 사용한다. '지자체'는 시, 도, 군, 읍, 면, 동 또는 이와 유사한 공식 행정단위를 뜻한다. 제안된 클럽이 지자체 내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국제이사회 회원개발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달리

승인하지 않은 이상 클럽이 소재한 지역에서 가장 적합하고 지역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공식 정부 행정단위를 사용한다.

- b. 동일한 '지자체'나 이에 상응하는 정부 행정구역에 위치한 클럽의 명칭은 동일한 지자체 또는 동일한 정부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타 클럽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클럽의 고유 명칭은 접미사로서 협회의 공식 기록상에는 정부 행정구획 다음에 괄호를 하여 사용한다.
- c. '호스트클럽'이라는 용어는 지자체 내에서 모(母)클럽의 명예를 인정하기 위한 명칭이며, 기타 특별한 혜택, 권한 또는 우선적 의미를 수반하지 않는다.
- d. 라이온스클럽의 명칭은 국제회장을 역임한 자 외의 생존한 사람을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 e. 어떤 라이온스클럽도 명칭에 'international(국제)'를 추가할 수 없다.
- f. 'Leo(레오)'라는 용어는 라이온스 클럽과 구별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다.
- g. 라이온스클럽 명칭에 기업명을 포함하는 경우, 기업명을 포함하기 전에 기업명 사용에 대한 허가를 증명하는 문서(예: 기업 공문 양식에 작성된 기업 대표의 서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6. 클럽 경계선

클럽 경계선은 클럽이 위치한 지자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 행정구역으로 설정하거나, 지구총재 관할 범위에 있는 단일지구, 정지구 또는 잠정지구 내 클럽이 위치한 복합지구 및/또는 지구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지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정한다.

7. 차터 승인일

차터 승인일은 차터 신청서가 승인되는 날이다. 이 날짜가 클럽 차터 기록 및 협회 공식 기록에 차터 승인일로 기재된다.

8. 차터

- a. 국제협회의 회장 및 총무처장이 신생클럽 차터에 서명한다. 스폰서클럽, 지구임원회 또는 지구위원회명도 기재된다.

- b. 신생클럽 차터는 지구총재 또는 코디네이팅 라이온에게 직접 송부된다. 지구 미편성 지역 내 클럽의 차터는 신생클럽 회장에게 송부된다.

9. 회비

차터회원은 차터회원 명부가 스폰서클럽, 코디네이팅 라이온 및 국제본부에 보고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회비를 납부한다. 차터 마감 직후 신생클럽에 회비가 청구된다.

10. 차터 신청서 제출 마감일

6월 20일 업무 종료 시간 이전에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에 위치한 국제본부에 접수된 차터 신청서가 해당 회계 연도에 처리된다.

11. 신생클럽의 존속 보증

- a. 한 회계연도 내 10개 이상의 신생클럽을 조직하는 지구는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2 부총재 또는 글로벌액션팀 GMT 지역 지도자/특별 지역고문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터 승인 전에 국제 회비의 절반이 납부되어야 한다.
- b. 지구는 한 회계연도 내 총 100명의 학생회원으로 구성된 최대 세 개의 신생 캠퍼스클럽을 조직할 것이 허용된다. 캠퍼스클럽을 추가로 조직하거나 학생회원을 추가로 영입할 경우, 회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차터 목적에 따라 캠퍼스클럽은 5명 이상의 학생회원을 보유한 클럽으로 정의된다.
- c. 국제본부가 사전 학생회원 프로그램 오용에 대해 파악한 경우, 총 회원수의 5% 이상이 학생회원으로 구성된 모든 지구는 다음 조치에 처해진다:
 - (1) 학생회원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지구 내 모든 캠퍼스클럽은 본 검토 절차 통보일로부터 45일 후 스태터스 쿼에 처해진다.
 - (2) 학생회원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지구 내 학생회원이 25% 이상인 모든 일반 클럽은 본 검토 절차 통보일로부터 45일 후 스태터스 쿼에 처해진다.

B. 지회클럽

1. 차터클럽을 결성할 시공간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클럽은 해당 지역 내 라이오니즘 확산을 위해 지회를 결성할 수 있다. 지회는 자(子)클럽 자격으로 선출직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회클럽 회장, 총무 및 재무와 회의한다. 지회의 집행위원회는 상기 세 임원과 지회연락원으로 구성된다.
 - a. 지회클럽은 이사회방침에 명시된 신생클럽 명칭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b. 지회 조직을 위해 최소 5명의 지회회원이 요구된다.
 - c. 지회회원은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권장된다.
 - d. 지회회원은 지회의 활동에 투표할 수 있고, 모(母)클럽의 회의에 참석 시 회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진다.
 - e. 지회클럽 회장은 지회회원에 의해 선출되고, 모(母)클럽 이사로 활동하면서 모클럽의 회의 및/또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회클럽에서 계획하는 활동 및 월간 재정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지회클럽과 모클럽간의 자유로운 토론 및 효과적인 소통을 도모한다. 지회클럽 회원은 모클럽이 개최하는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도록 권장된다. 모클럽은 모클럽의 회원 중 한 명을 지회연락원으로 지정하여 지회클럽의 현황을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지회연락원은 지회클럽의 네 번째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 f. 모클럽은 국제, 복합지구 및 지구 회비를 징수 및 납부한다. 지회클럽 회원은 모클럽의 월간 회원보고서에 추가, 삭제 및 기록된다.
 - g. 지회클럽은 국제이사회 회원개발위원회가 승인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모클럽과 동일한 지구(단일 또는 정지구) 내에 위치해야 한다.
 - h. 국제이사회 회원개발위원회가 승인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지회클럽은 현재 라이온스 클럽이 봉사하고 있지 않는 지역사회/지역에 결성될 수 있다.
 - i. 지역사회는 공동 장소에서 교류하는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된다.
 - j. 모클럽은 지회클럽 결성 제의에 대해 해당 지구총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k. 모클럽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해당 지회클럽은 해산될 수 있다. 지회클럽의 회원은 모클럽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모클럽은 지회클럽 해산에 대한 통보서를 국제협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l. 지회클럽이 새롭게 정식 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회클럽 전환서를 작성하여 모클럽의 총무와 지구총재에게 서명을 받음으로써 지회클럽의 회원이 모클럽에서 퇴회 처리 된다.

2. 지회클럽 결성 항의

- a. 기존 클럽이 항의하는 경우: 일반 클럽 결성에 대한 항의와 동일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모클럽의 지회클럽 결성에 항의할 수 있다.
- b. 지구총재가 항의하는 경우: 지구총재는 국제이사회에 지회클럽의 발전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C. 신생클럽 결성 항의 절차

국제본부는 신생 라이온스 클럽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신생클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및/또한 결성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신생클럽 결성 제의에 대한 항의 처리 시, 다음과 같은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클럽이 국제협회 클럽확장 이니셔티브, 신생클럽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성된 경우 또는 법률부와 상의하여 회원 및 신생클럽 운영과가 설정한 이사회 방침에 준하지 않는 한 항의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항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영역에 관한 항의- 어떠한 클럽도 특정한 지역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명칭에 관한 제약- 어떤 클럽도 현 이사회 방침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생클럽 명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다. 경계선에 관한 제약- 어떠한 클럽도 신생클럽의 영역을 제한할 수 없다. 4. 승인에 관한 제한- 기존클럽은 신생클럽이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나 신생클럽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

진정서 배포 지침: 항의자는 회원위원회 및 국제이사회의 구성원에게 배포할 모든 관계 서류를 회원 및 신생클럽 운영과 과장에게 제출한다. 항의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이사에게 문서를 배포할 수 없으며 아래 절차에 나열한 당사자 이외의 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1. 항의

- a.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예: 제안하는 신생클럽의 경계선이 항의를 제기하는 클럽의 경계선 내에 있을 경우) 기존클럽 혹은 결성 예정인 클럽이 소속한 지구의 지구총재가 항의할 수 있다. 개별 회원이 항의를 신청할 수 없다

클럽의 항의:

항의를 서술한 진정서가 클럽전체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클럽차타가 승인되기 전에 우선 지구총재 및 협의회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원 및 신생클럽 운영과의 과장에게 사본을 발송하도록 한다. 회원 및 신생클럽 운영과에 진정서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구총재 및 혹은 협의회회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지구총재 및 혹은 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해결책을 신생클럽 및 마케팅과에 제출한다.

지구총재의 항의:

지구총재가 결성 예정인 클럽차터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는 이유 및 추천사항을 차터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제본부로 접수되어야 한다. 지구총재가 현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항의할 권리를 상실한다.

- b. 지구임원 혹은 지구총재가 서명한 항의 이유 및 결성 예정인 클럽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으며 또 기존 클럽활동에 결성 예정인 클럽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진정서를 신생클럽 차터 승인일 전에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기타 서면으로 국제본부에 제출한다.
- c. 하기 C.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d. 진정서와 함께 US\$5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로 제소 관련 비용을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 이사회가 항의자의 항의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제소에 따른 비용을 반환한다.
- e. 항의자는 진정서의 사본을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협의회회장, 지구총재, 회원 및 신생클럽 운영과의 과장 및 항의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진정서를 접수하는 대로 회원 및 신생클럽 운영과장은 가능한 경우, 진정서 사본을 항공편으로 항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공이 항의자 측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답변을 전달했다는 증명을 답변 제출과 함께 항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답변:

항의에 대한 답변은 직접 관계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되어야 하며 하기 C항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원본이 우편, 이메일 또는 속달로 항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제본부에 접수되어야 한다.

3. 항의 및 답변 방법

- a. 진정서는 다섯(5) 쪽을 넘지 않아야 하며 클럽임원 또는 지구총재가 서명해야 한다. 본 분량 제한에 대한 초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진정서 분량 제한과 별도로 한 쪽 짜리 표지에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 지구, (b) 항의자의 성명과 주소, 이메일 및 팩스번호, (c) 결성 예정인 신생클럽명, 주소, 이메일 및 팩스번호, (d) 결성 예정인 신생클럽의 차터일
- b. 제출하는 진정서의 말미에 클럽의 정식 대표자 혹은 지구총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 c. 상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진정서는 검토되지 않으며 규정 미달 사유와 함께 제출자에게 반송된다. 단, 미달 사유에 따른 적절한 서류가 적시에 접수될 경우에는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개발위원회는 본 규정을 미준수한 진정서에 대한 검토를 거부할 수 있다.

회원개발위원회는 상기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상기 규정에 따르지 않은 진정서에 대한 검토 또는 답변을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차터 교부 거부에 대한 문서는 신생클럽 차터 신청서에 기재된 신생클럽 회장에게 반송된다. 이 클럽은 상황이 변경될 경우 차터를 재신청할 수 있다.

회원개발위원회가 차터 교부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이에 대해 항의가 고려되지 않는다. 회원개발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항의에 대한 모든 정보는 반드시 회원부로 접수되어야 하며, 회원개발위원회가 연중 검토한다.

국제본부에 차터 신청에 대한 공식 항의가 접수되지 않는 한, 모든 클럽이 차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매년 7월 1일 이후, 이전 회기 5월 1일 전까지 접수되어 미결된 차터 신청건은 지구총재에게 송부되며 해당 회기 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국제본부로부터 보류 중인 차터비를 차터위원회에 수표로 반환 또는 지구를 대신하여 국제재단에 기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매년 7월 1일 이후, 이전 회기 5월 1일 이후 접수 후 미결된 차터 신청건은 해당 회기 지구총재에게 송부되어 차터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구총재가 차터를 승인하는 경우, 클럽 차터가 인준되는 8월 31일까지 요청된 모든 서류 및/또는 차터비가 회원 프로그램 및 신생클럽 마케팅과로 반드시 접수되어야 한다. 신생클럽이 8월 31일까지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구총재는 국제본부에 보류 중인 차터비에 대한 반환을 반드시 요청하여 차터회원에게 반환하거나 지구를 대신해 국제재단에 기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에 해당 클럽은 폐쇄된다. 본부 직원이 글로벌 액션팀 지역지도자와 상의하여 수표 발송처를 결정한다.

D. 상

1. 국제 확장상

a. 다음과 같이 조직한 클럽 수에 따라 확장상을 교부한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동일한 디자인의 15 종류의 상이 있다:

- (1) 클럽 1개 - 확장상 레벨 1 (청색으로 장식)
- (2) 클럽 2개 - 확장상 레벨 2 (청색으로 장식)
- (3) 클럽 3개 - 확장상 레벨 3 (청색으로 장식)
- (4) 클럽 4개 - 확장상 레벨 4 (청색으로 장식)
- (5) 클럽 5개 - 확장상 레벨 5 (청색으로 장식)
- (6) 클럽 10개- 확장상 레벨 6 (보라색으로 장식)
- (7) 클럽 15개- 확장상 레벨 7 (보라색으로 장식)
- (8) 클럽 20개- 확장상 레벨 8 (보라색으로 장식)
- (9) 클럽 25개- 확장상 레벨 9 (보라색으로 장식)
- (10) 클럽 30개- 확장상 레벨 10 (보라색으로 장식)
- (11) 클럽 40개- 확장상 레벨 11 (황금색으로 장식)
- (12) 클럽 50개- 확장상 레벨 12 (황금색으로 장식)
- (13) 클럽 75개- 확장상 레벨 13 (황금색으로 장식)
- (14) 클럽 100개- 확장상 레벨 14 (황금색으로 장식)
- (15) 클럽 150개- 확장상 레벨 15 (황금색으로 장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을 수여한다. 상은 소급하여 교부하지 않는다.

b. 어떤 클럽을 결성한 상은 최대 두 개까지 수여한다. 본 상은 지구총재의 판단에 의해 신생클럽 결성에 최고의 공을 세운 두 명의 라이온에게 수여한다. 수상자는 기타 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전출회원 또는 라이온스클럽 또는 라이오네스클럽의 전회원에 한하며 신생클럽회원에게 수여하지 않는다. 지구총재가 수상자 선정에 대해 국제본부에 보고한다. 지구총재가 없는 지구의 경우 차터 신청서에 기입된 해당 클럽 결성 책임자가 확장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 c. 클럽 확장상은 클럽 차터와 함께 지구총재에게 송부한다. 클럽 확장상은 클럽이 결성일로부터 1년 1일이 경과한 후에 수상한다. 클럽 확장상은 지구총재에게 송부하여 클럽 결성자에게 수여한다.
- d. 신생클럽 차터 승인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확장상을 신청할 수 있다.
- e. 현지지구총재 및 국제본부 직원은 확장상을 수상할 수 없다.
- f. 신생클럽을 조직한 각 라이온에게는 국제회장의 서신을 전달한다.

2. 지구총재 확장상

- a. 지구총재 확장상은 국제회장의 프로그램에 따라 지구총재에게 수여된다. 신생클럽 결성에 대한 지구총재 클럽확장상은 그 임기를 완료한 다음 회계연도의 6월 1일 이후 직전총재에게 송부한다. 이 상에는 전회계연도에 결성하여 이듬해 5월 31일 시점에 굿 스탠딩을 유지하는 신생클럽 수가 표시된다.
- b. 기록을 위해 작성이 완료된 차터 신청서가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에 위치한 국제본부에 6월 20일 업무 종료 시간까지 제출된 경우, 접수된 회기분으로 계산하며 해당 상은 또한 동 회계연도 내에 수상 자격을 갖춘 클럽, 지구 및 국제임원분으로 계산한다.

E. 신생국가에 관한 규정

1. 하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신생국가 및 영역에 신생클럽의 차터 신청을 국제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a. 현지 정부 구조 하에 국제라이온스클럽의 목표 및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 b. 신생국가 및 영역의 주민들이 현지 라이온스클럽에 자유롭게 입회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 c. 클럽 및 지구가 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에 준하여 운영된다.
 - d. 클럽 및 지구 운영에 따른 필요성이 적절하게 충족된다.
 - e. 현지 거주자 및 시민들이 클럽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
 - f. 신생국가의 은행 제도 및 통화 상황이 협회로 자금을 이전하도록 허용한다.
 - g. 신생클럽 결성에 관한 규칙이 준수된다.
 - h. 코디네이팅 라이온이 국제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 i. 라이온스 임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클럽 결성 전에 가이딩 라이온을 임명한다. 가이딩 라이온은 신생클럽 결성에 있어 진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위해 결성 전후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 j. 가이딩 라이온은 신생클럽 조직을 감독하는 것과 더불어 소속 지역의 전회장이나 전이사가 클럽을 방문하고 클럽 결성 관계자들과 담화하도록 한다. 전임원은 조직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다. 전임원은 결성 후에 클럽을 관찰하고 진척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k. 새로운 국가에 클럽을 결성하기 전에 예정된 신생클럽의 스폰서클럽은 신생클럽 협조 계획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에 따른 계획안을 제출한다. 이는 스폰서클럽의 책임이다.
 - l. 조직될 클럽의 회원들은 회비지불, 기금모금 활동 및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한다.

- m. 스폰서클럽은 스폰서 할 신생클럽의 회비를 지불하지 아니 한다. 클럽이 차터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모든 재정적인 부담은 신생클럽이 책임진다.
- 2. 조건이 전부 충족되었다는 증빙 서류가 국제본부 내 회원개발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 3. 신생클럽의 차터가 승인될 때 국제이사회는 그 신생국가 지구에 소속할지 또는 지구 무소속일지를 결정한다.

F. 중국관계 조정위원회

- 1. **목적** – 중국에 신생클럽 조직 및 장기적인 회원증강을 촉진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모두 협회의 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방침에 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적절한 승인에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 2. **필수 조건** – 본 위원회는 협회의 헌장 및 부칙, 이사회 방침, 중국과 외교관계에 관한 역사, 현재 중국 내에서 실시되는 협회의 현회원 및 확장 프로그램에 정통해야 한다.
- 3. **임무**
 - a.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와의 연락원으로서 국제이사회 및 집행위원회를 대표한다.
 - b. 중국정부 관계자와 회의를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여행한다.
 - c. 협회, 중국, 대만 300 복합지구, 동양 및 동남아세아 현장지역 내의 기타 국가 및 영역간의 외교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d. 위원회의 목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정부, 법률 및 사회개발 사항에 관해 익히 알고 있어야 한다.
 - e. 중국 내의 라이온스클럽의 발전 및 조직을 위해 협조한다.
 - f. 중국 내에서 라이온스클럽 및 협회의 이미지, 명성 및 용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홍보 기회를 모색한다.
 - g.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및 장래 실천사항을 권고한다.
 - h. 국제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요청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 4. **회의**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와 국제회장, 집행위원회 혹은 국제이사회가 특별히 지시하거나 혹은 승인할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 5. **보고** – 위원회가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의 활동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집행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관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이사회에 의뢰한다.

2019년 4월 6일 발효

G. 주재사무소

1. 급여 및 혜택

- a. 현지에서 확장에 종사하는 정규 주재원은 해당 국가의 취직 상황, 경제 상태, 사회 정세, 급여 제도 등(단, 통화에 관한 조건뿐만 아니라 근무 성적, 생활 수준, 직원 혜택도 포함)에 따라 국제본부의 과장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불한다.
- b. 정규 및 시간제 주재원을 위하여 100,000달러의 사고사 및 사지상실보험을 부여한다.

2. 여행 및 경비

일반 경비 상환 방침을 적용하며 하기 사항을 추가한다.

a. 청구서 제출

(1) 정규 직원

여행 중의 경비만 청구한다. 규정의 청구서에 기입하여 매월 국제본부로 송부한다.

(2) 시간제 직원

일반 경비 상환 방침에 따라 여행 중의 경비만 청구한다.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규정의 청구서에 기입하여 매월 국제본부로 송부한다.

b. 자동차로 이동

(1) 미국의 경우 일반 경비 상환 방침을 적용한다.

(2) 문서에 의한 설명과 행정임원 양자의 승인이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

c. 특별 여행

대회참석 등 장거리 여행 및 특별 여행은 특별한 승인 하에 검토한다.

현장지역

1. 현장지역 명단(회원국)

I. 미합중국 및 그 영역인 버뮤다, 바하마 제도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Commonwealth of The
Barbados
Bermuda
Bonaire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uracao
Dominica, Commonwealth of
Grenada
Guyana, Co-operative Republic
Jamaica
Montserrat
Puerto Rico, Commonwealth of
Saint Christopher-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int Maarten (Netherlands, Antilles)
Suriname, Republic of
Trinidad & Tobago, Republic of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II. 캐나다

Canada
Saint Pierre and Miquelon, Territorial Collectivity of

III. 남미, 중미, 멕시코 및 카리브해 제도

Argentina Republic
Belize
Bolivia, Republic of
Brazil, Federative Republic of
Chile, Republic of
Colombia, Republic of
Costa Rica, Republic of
Dominican Republic
Ecuador, Republic of
El Salvador, Republic of
French Guiana
Guadeloupe, Department of
Guatemala, Republic of
Haiti, Republic of
Honduras, Republic of
Martinique, Department of
Nicaragua, Republic of
Panama, Republic of
Paraguay, Republic of
Peru, Republic of
Saint Barthelemy
Saint Martin
United Mexican States
Uruguay, Eastern Republic of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IV. 유럽

Aland Islands
Albania, Republic of
Andorra, Principality of
Armenia, Republic of
Austria, Republic of
Azerbaijan, Republic of
Belgium, Kingdom of

Belarus, Republic of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Republic of
Channel Islands
Croatia, Republic of
Cyprus, Republic of
Czech Republic
Denmark, Kingdom of
England
Estonia, Republic of
Faroe Islands
Germany, Federal Republic of
Finland, Republic of
French Republic
Georgia, Republic of
Gibraltar
Greenland
Hellenic Republic (Greece)
Hungary
Republic of Iceland,
Republic of Ireland,
Republic of Isle of Man
Israel, State of
Italy, Republic of
Kosovo, Republic of
Kyrgyzstan, Republic of
Latvia, Republic of
Liechtenstein, Principality of
Lithuania, Republic of
Luxembourg, Grand Duchy of
Malta, Republic of
Macedonia, FYROM
Moldova, Republic of
Monaco, Principality of
Montenegro, Republic of
Netherlands, Kingdom of the
Northern Ireland

Norway, Kingdom of
Poland, Republic of
Portugal, Republic of
Romania
Russian Federation
San Marino, Republic of
Scotland
Serbia, Republic of
Slovak Republic
Slovenia, Republic of
Spain, Kingdom of
Sweden, Kingdom of
Swiss Confederation
Tajikistan, Republic of
Turkey, Republic of
Ukraine
Wales

v. 동양 및 동남아시아

Brunei Darussalam, State of
Cambodia, Kingdom of
China Beijing
China Dalian
China Guangdong
China Hong Kong
China Macao
China Qingdao
China Shaanxi
China Shenyang
China Shenzhen
China Taiwan
China Zhijiang
CMNI (Saipan)
Guam
Japan
Korea, Republic of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aysia, Federation of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Mongolia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hilippines,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Republic of the
Singapore, Republic of
Thailand, Kingdom of

VI. 인도, 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

Afghanistan, Islamic Republic of
Algeria,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ngola, Republic of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People's Republic of
Benin, Republic of
Bhutan, Kingdom of
Botswana, Republic of
Burkina Faso, Democratic Republic of
Burundi, Republic of
Cameroon, Republic of
Cape Verde, Republic of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Republic of
Comoros, Union of the
Congo, Republic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Djibouti, Republic of
Egypt, Arab Republic of
Ethiopia,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Gabonese Republic
Gambia, Republic of
Ghana, Republic of
Guinea, Republic of
Guinea-Bissau, Republic of

India, Republic of
Iraq, Republic of
Cote d'Ivoire, Republic of
Jordan, Hashemite Kingdom of
Kazakhstan, Republic of
Kenya, Republic of
Lebanon, Republic of
Liberia, Republic of
Madagascar, Republic of
Malawi, Republic of
Maldives, Republic of
Mali, Republic of
Mauritania, Islamic Republic of
Mauritius, Republic of
Mayotte
Morocco, Kingdom of
Mozambique, Republic of
Namibia, Republic of
Nepal, Kingdom of
Niger, Republic of
Nigeria, Federal Republic of
Pakistan, Islamic Republic of
Palestine, State of
Reunion, Department of
Rwanda, Republic of
Democratic Republic of São Tomé and Príncipe
Senegal, Republic of
Seychelles, Republic of
Sierra Leone, Republic of
Somalia
South Africa, Republic of
South Sudan
Sri Lanka,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waziland, Kingdom of
Tanzania, United Republic of
Togo, Republic of
Tunisia, Republic of

Uganda, Republic of
United Arab Emirates
Zambia, Republic of
Zimbabwe, Republic of

VII.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제도

American Samoa, Territory of
Australia, Commonwealth of
Fiji Islands, Republic of the
Indonesia, Republic of
New Caledonia and Dependencies, Territory of
New Zealand
Norfolk Island, Territory of
Papua New Guinea
Tahiti
Timor-Leste, Democratic Republic of
Tonga, Kingdom of
Vanuatu, Republic of
Samoa, Independent State of

2. 개별 국가 또는 영역의 소속 결정 순서

- a. 새로운 또는 기존 국가 혹은 영역을 헌장지역에 소속시키는 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b. 이전의 결과로 기존 복합지구 및 국가 또는 영역을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
- c. 이전 신청서에는 이전을 희망하는 이유를 첨부하고 해당 국가의 정지구와 복합지구가 이 조건을 검토하여 승인한 공식회의 회의록을 증명으로 첨부한다.
- d. 해당국의 이전 요청서를 발표 및 수락하는 헌장지역의 현 국제이사들로부터 피드백을 요청한다.
- e. 이전 신청서는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10월/11월 또는 3월/4월 국제이사회가 개최되기 30일 전에 이전 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f. 이사회가 전출을 승인한 경우 그 직후의 국제대회 종료 시에 현장지역 변경이 발효된다.